

낙태에 대한 성경적 소고

원3년 김한식

I. 서론

매년 전세계에서 낙태하는 수효는 대략 5천만 건을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효는 2차 세계대전 중의 전사자보다도 훨씬 능가한다.

어떤 면에서 전쟁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의 비참상이 낙태보다도 더 강하게 어필해 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멀절 당한 인간존재에 그 위의를 찾는다면 낙태보다도 인간을 멀절하는 힘이 더 강한 것은 없다고 본다. 얼마 전부터 사회는 가족계획이니, 혹은 더 나은 인간생활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범세계적인 운동 즉 산아조절이니 번식력조절이니 하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사회 윤리에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즉 문제의 초점은 생식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선택한 목적을 인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가란 문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격적 접근 방식을 찾아보려고 한다.

II. 본론

1. 낙태의 종류와 정의

낙태는 크게 인공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논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유산에 의한 것이며 또 이러한 인공유산도 2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치료유산과 범죄유산이 있다. (이후로 인공유산과 낙태는 같은 의미로 표현)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유산은 물론이고 치료유산까지도 기독

교 윤리적 입장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낙태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다.

브란트는 낙태를 「태아가 출생하기 전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단절된 것」으로 정의했다. 인공유산에 대해 스트라우스는 고의적인 유산은 「어떤 사람이 임신의 정상적인 과정을 교란시켜서 태아의 조속한 죽음을 낳게 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 낙태에 대한 개신교와 천주교의 입장

개신교와 천주교는 낙태에 관해서도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① 천주교의 입장

천주교는 낙태를 하나님의 자연법을 위배하는 행위라 하여 낙태행위를 정죄하고 있다. 즉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상태의 질서와 조화를 지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소위 토마스아퀴나스의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한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진리이며 이것이 자연질서 속에서 있을 때 선이라고 한다. 고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연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자연질서 속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므로 낙태 행위를 이러한 질서를 저해하는 고의적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다.

② 개신교 입장

그러나 개신교에선 천주교처럼 낙태를 쉽게 처리해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이 귀한것임은 사실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행위를 자행했을 때 창조질서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으로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으나 죄를 범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개신교에서 낙태행위를 범죄행위라고 단정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겼다는 점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명령하신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것에 의해서 환명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3. 태아의 생명에 관한 성경적 이해

앞 장에서 낙태는 제6계 명을 어긴 행위이므로 살인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 태속에 있는 생명이 언제부터 영혼을 소유한 인간으로 정의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성경은 이점에 대해 밝히 말해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임신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물로서 준 인간생명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함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낙태에 관한 기록은 성경 출 21:22에 단 한번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여자를 상하게 해서 유산하게 하고 다른 상해가 없으면 유산케한 사람은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내며…」

이 점에 대해 다우마 교수는 다음 2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두 사람이 다투다가 유산이 되어 태아가 죽고 여인이 살았을 경우와 두번째는 여인이 심하게 다쳐 여인도 또한 죽었을 경우다.

이것은 각 경우에 따라 형벌이 다르다. 만약 어린이만 죽었다면 그 죽음을 가져오게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산모가 죽었다면 소위 동태복수법이 효력을 발생하여 그 죄는 「복수에는 복수으로」라는 규칙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서 구약은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생명의 가치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브란트교수도 「만약에 의사가 산모의 생명과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태아의 생명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산모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태아의 생명이 산모의 생명보다 덜 가치있게 고려되어 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태아의 생명에도 확실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만큼 부여하고 있느냐이다.

구약엔 매우 강한 비유적 표현으로 태아를 형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묘사되어 있다. 용 10:10 이하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영진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골격과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이러한 용의 고백에 덧붙여 시편기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당신

이 나의 膽腑를 조성하였으며 당신이 나의 모친의 태종에 나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눈이 아직 조성되어지지 않는 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冊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과 현재성을 다루고 있는 이 시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을 산모의 태종에 태아를 조성하시기에 분주한 예술가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아는 임신된 순간 전부터 그것때문에 분주하셨던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다.

또 생명의 위대성은 아기의 탄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신의 순간에 있다. 그러므로 태아가 비록 자아의식이 없다고 해도 수태의 순간부터 태아는 생명체이다.

덧붙여 말하면 그 태아는 생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유충은 비록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 만큼 작지만 수태의 그 순간부터 발달학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의학자에 의하면 임신 12주째가 되면 태아는 아름답게 형태를 갖춘 생명으로서 태속을 자유롭게 운동한다고 한다.

시 51:5 「모친이 최종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잉태시에 이 생명을 가진 실체로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모태에서 경험하고 그 지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생명의 시작이 그의 잉태할 때부터였다는 표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에 대한 가치가 구약에서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다.

누가는 가브리엘의 마리아에게 수태의 소식을 전할 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여기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사물의 잉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잉태와 동시에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 사가랴가 요한을 잉태했을 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완전한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얘기한다. 왜냐면 성령의 충만은 영혼을 가진 인간 생명에게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또 성경 곳곳에서 태아가 어린아이로 불려진다.

「내 <복종의 아이>가 기뻐 뛰도다」 여기서 아기를 가르키는 헬라

어는 「BREFOS」이다. 이러한 단어는 예수께서 무릎에 앉히시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 데리고 오는 어린이를 가리키는데 사용했다.

이와같이 성경은 곳곳에서 태아와 꼬마에 대한 단어를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서 볼때 성경은 임신과 동시에 태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신과 동시에 시작된 생명을 해치는 것은 제6계명을 범한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행위임에 틀림없다.

4. 낙태에 대한 諸 이론 비판

낙태수술은, 다른 종류의 방법은 모두가 임신예방인데 비해 이것은 출산 예방방법이다. 고대 이교사회에서 낙태나 태아살해의 풍습은 정죄되어 왔다.

「베드로의 계시」라는 책 중에는 임신을 하고 낙태를 시킨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임신에 관한 장이었다. 초대교회는 철저한 상태로 낙태를 금해왔으나 현대 사회에서부터 낙태에 대한 도가 심해져 급기야 사회윤리적인 문제로 발달되었다.

한국에서도 처음 1974년 기독교 협의회가 「인공유산을 허용했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그 산하기관인 가정생활 위원회 애육위원회가 인공유산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 책임을 전제하여 자녀수효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유 보장.

(B) 부부는 수태조정을 위해 자유롭게 피임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회는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치아니한 임신을 예방.

(C) 인공유산은 원칙적으로 인구조절의 방법이 될 수 없으나.

ㄱ. 임신으로 인해 모체에 치명적인 위험시.

ㄴ. 결정적 유전병으로 그 태아에게 더 큰 불행이 예상될 시.

ㄷ. 비상상태(전쟁, 강간) 하에서 강제된 임신, 혹은 미성년의 무지에 의한 무분별한 임신 등으로 그 경과가 더 큰 불행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될 때… 단 12주 이내에 가능하다.

이러한 선언문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 가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 내에서 공공연한 낙태행위의 허용은 엄연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서므로 생명에 관한 선택과 유기는

인간이 간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애육위원회의 선언문에는 인간의 유익과 평의를 중심한 실용주의적이며 상황윤리적인 동기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보인다. 사실 인간이 생명의 신성불가침적인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무이다. 이미 존속하는 어린한 생명이 어떤 형태로든 침해 당할 수 없는 것처럼 장래성장할 권리 가지고 있는 태아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가능성의 생명도 이를 저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창 9:7에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고 했으며 출 21:12 등에는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의 고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선언문에서 임신후 12주 이내에는 인공유산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12주까지는 아직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하는 생각에서 발로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태아의 생명은 임신과 동시에 부여되어지므로 이것은 고의적 살인행위임에 틀림없다.

부모가 유전병이 있어 기형아가 될 것이 예전될 때, 강간으로 원치 않는 아이가 임신되어졌을 때 예전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낙태를 허락하고 있다. 이것은 내일의 예전되는 생활의 피로움을 면하기 위해 생명을 살해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진정한 기독신자라면 현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내일의 행복과 평화를 바랄 수는 없다. 비록 미래 고통의 날이 예상되더라도 현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인의 사명이다. 동시에 미성년의 무지에 의한 임신에 대해 낙태를 합리화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에 대한 자유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며 또 비록 무지에 의한 임신이라 할지라도 예전되는 고통을 덜기 위해 태아를 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영역 밖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없다고 생각할 때 낙태라는 살인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책임을 묻고 교육적인 견지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애육위원회의 선언문은 기독교의 적이며 우리 개혁주의 성도는 엄연히 거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낙태의 합법화는 전세계를 거쳐 얼마 있지 아니해서 한국에서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낙태법 승인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5. 어떤 경우든지 모든 낙태를 다 거절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타협이 가능한 점이 있다. 그것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다같이 위험에 직면하여 어느 한 생명만을 건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에 우선권을 둘 수 있다.(출 21에 근거)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여기에 임하는 의사나 산모가 한 생명의 포기에 대한 책임과 회개하는 양심으로 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이것 자체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인 때문이다.

III. 결론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연구문제인 인구팽창 문제를 인간생명자체를 말살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과 교육을 통한 방법으로 모색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낙태행위를 제6계명과 관련시켜 연구할 때 이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므로 우리는 비록 태아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보호해야하며 그 인간을 존중함으로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편집후기

신학의 카오스 속에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위해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또 하나의 절규가 여기 나간다.

이것은 250 명 고신인의 대변지이며, 얼굴 그 자체이다. 비록 몸무게가 가볍고 생김새가 아직 뚜렷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더욱 사랑해 주시길 부탁한다. 아직 7 살이니까

☆ ☆ ☆

권두언을 써 주신 원장님, 발간사를 주신 학우회 회장, 각 제목에 따라 원고를 주신 김병원, 이보민, 박종칠, 이상규 교수님 특별히 일선 목회에 바쁘신 중에서도 원고를 주신 박정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수근, 남후수, 김한식 제씨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

한번쯤 다루어 보고 싶은 제목들이 너무 많았다. 허나 시간과 경제라는 씨줄과 날줄의 결림 속에서 무척이나 괴로워 했었다.

사실 학생들의 원고를 많이 싣고 싶었다. 그러나 학과과제에 쓰겨 과외연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누차한 변명들 때문에 많이 도 안타까웠다. 제8호는 140페이지 정도로 더 늘릴까 한다.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리라. 『식』

第七号

高麗神學報

1984

1984년 5월 20일 인쇄

1984년 5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철수

편집인 : 김한식

인쇄 : 영도 일인쇄출판사

<TEL. 48-2002>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학우회

600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

TEL. 26-3181